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 2. 강선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2.)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5.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우 의원)

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필수의료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연구·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 운영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조의2 및 제4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천우정)

현행 법령에는 이미 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국립대학병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이 명시적으로 포

함되어 있음.

또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개 법률에도 대학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에 법을 개정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사업범위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가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 법령하에서도 대학병원은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기존의 연구는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담당부처의 지도·감독 기전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이관함으로써 대학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재 교육부는 대학병원의 경영에 있어 병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위함으로 보임.

반면,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 따라 대학병원은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현재에 비해 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정부의 개입 증가는 대학병원의 성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등이 있는데,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 성남시의료원의 부실

운영 논란 등 공공의료원에 대한 적자 및 부실운영 논란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즉, 공공의료에서의 역할강화를 위한 대학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정부의 공공의료역량 강화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대학병원의 자율성 약화로 인한 성과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상의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의 학생, 전공의, 간호 등 의학계 학생들을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고 의학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능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필수·공공의료기능이 병존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중 어느 부처가 해당 기관의 소관 부처가 될 것인가의 문제는 대학병원의 소관 이관 문제는 대학병원의 역할을 교육과 연구에 우선할 것인지, 공공의료에 우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교육부는 동 법안은 복지부-교육부 협업으로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대통령 주재 회의, ‘23.10.19.)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소관 부처의 이관에 동의하고 있음. 또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수술실, 중환자실 등 시설장비 첨단화 등에 대해 재정 투자를 강화(1,836억 원, ’25)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투자를 저해하던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 규제를 혁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 신규 투자(110억 원, 25) 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교육과 연

구 역량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 발표한 투자·지원 정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동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으로 인하여 교육·연구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국립대병원의 임상 실습교육 및 기초·임상연구는 우수한 진료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며 국립대병원에 대한 투자 강화를 통해 진료역량 강화가 교육·연구역량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대학병원의 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소관 변경에 따른 효과와 지역의료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소관 변경에 따른 교육·연구 역량 저하 우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소관 변경을 반대하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에게향후 비전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지역 필수의료 발전을 위해 소관 변경의 필요성이 있지만, 국립대병

원 구성원들의 합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의료 강화, 국립대병원에 대해 지역의료 거점 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대병원을 교육병원 이상의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로 이관 필요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이행 필요함.

이에 김민전 의원, 장종태 의원,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